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민원의 정의 및 처리 절차 등 신설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36호)

2025.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민원의 정의 및 처리 절차 등 신설	2
2. 개정안 부칙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20.
3. 회 부 일 :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부장관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와 행정적·재정적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시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제30조의10).

학교민원의 대응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으나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민원의 개념과 교육활동 존중 의무, 민원처리 원칙 등 주요 사항을 법제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민원대응팀과 통합민원팀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관할청의 조직·인력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 권한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제36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민원의 정의 및 처리 절차 등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학교민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제30조의10)에 더하여,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학교민원 관련 조항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제36조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생략)	제37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현행 제30조의10과 같음)
<신설>	제3절 학교민원 대응
<신설>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① “학교민원”이란 학생과 보호자 등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신 설>

2. 제20조에 따른 교육

3.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5.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해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분류와 처리를 위해 관할청에는 통합민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보호자 등의 민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 처리의 지원 또는 해당 업무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이 2025.6.21.부터 시행되고 있음.¹⁾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학교민원 관련 조항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개정안에 따라 학교민원의 정의, 학교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이 규정될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 개정안은 제35조의 제목을 ‘학교민원의 정의’로 규정하고, 제1항에서 학교민원의 정의를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학교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 학교민원의 정의 내용으로 개정안 제1항 각 호에서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제20조에 따른 교육, 제20조의2에

1)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566호, 2024.12.20. 개정, 2025.6.21. 시행)

다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등 현행 법률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해당 조항이 교원의 업무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각 조항의 내용을 학교민원의 정의에 포함할 경우 학교민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구체화한 내용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활동’은 ‘생활지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²⁾ 이를 고려하여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3.1.부터로 규정하고, 학교민원의 내용으로 2026.3.1.에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862호)의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와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인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발의된 2025.11.20.과 심사 중인 시점의 「초·중등교육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25.2., p.8

참고: ‘교육활동 중’의 예시(일부)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⑩ 그 밖에 법령에 의해 교원이 직무상 행하는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법」 제18조의5는 보호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의2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안이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학교민원 정의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제1호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862호, 2025.4.1. 개정, 2026.3.1. 시행)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호	제20조에 따른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3호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862호, 2025.4.1. 개정, 2025.10.2. 시행)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구분	내용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제5호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주: 개정안은 음영 및 밑줄로 표기함

- 아울러 학교민원은 학생, 보호자 등이 각각 제기하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함께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교민원 제기자로 ‘학생과 보호자 등’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교민원’을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는 ‘요구’를 기술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일하게 ‘관련된 요구’, ‘에 대한 요구’ 등을 추가하고,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다음 각 호’는 모두 학교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2항**은 학교민원 제기자가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을 준수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³⁾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개정안에서 학교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보호자에 대해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존중할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을 준수하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35조제1항의 학교민원 제기자에는 학생, 보호자 등이 모두 포함되고,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도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 제35조제2항에서 「교육기본법」상의 의

3)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무는 보호자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므로, 학생에 대해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내용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육기본법」의 학습자 및 보호자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u>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3조 (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u>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u>

- 아울러 개정안 제2항은 학교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조문이 포함된 조의 제목 ‘학교민원의 정의’와 내용이 상이하므로, 해당 항을 분리하거나 조의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제36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 개정안은 제36조의 제목을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로 규정하고 제1항에서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 제2항에서 학교민원의 접수·처리 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 제3항에서 학교민원 제기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조치, 제4항에서 교육활동 침해 민원 처리, 제5항에서 필요 사항 위임 등을 각각 규정함.

- 개정안 **제1항**은 학교민원대응기구로 학교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해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고, 학교민원의 접수·분류와 처리를 위해 관할청에 통합민원팀을 두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에 대해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현재 학교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이 구성되어 학교장 책임하에 일원화된 민원접수·처리, 특이민원 처리, 관할청 보고 및 지원요청 등을 수행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이 구성되어 관할청의 교권보호 업무부서 등과 연계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 또는 특이민원의 접수·검토·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학교민원대응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에 대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보 의무가 부과될 경우, 학교민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안정적 업무 수

행 및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학교민원 대응 체계 및 환경 조성 현황]

구분	기관 단위 대응 체계 구축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 조성		
	학교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통화녹음 전화기	통화연결음	민원상담실
조치 현황	14,145교 (99.9%)	207개 (100.0%)	13,993교 (98.8%)	13,590교 (96.0%)	13,473교 (95.2%)

주: 1. 2025.2.28. 기준임

2. 괄호 안은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14,159교, 교육(지원)청 207개 기준 비율임

자료: 교육부

- 개정안은 제3항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의 민원이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학교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 따르면 학생과 보호자 등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제기한 학교민원의 내용이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개정안을 규정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학교민원을 제기하거나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은 개정안에 따른 조치와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⁴⁾를 모두 받게 되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

4) 「교원지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당하는 학교민원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관련 조치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교원지위법」상의 조치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학교민원 대응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조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해당 조항은 안 제35조제2항과 관련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므로, 안 제35조제2항과 안 제36조제3항을 같은 조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4항**은 학교의 장이 제3항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 처리의 지원 또는 해당 업무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는 ‘학생과 보호자 등의 민원’, ‘그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어, ‘제3항의 처리’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3항의 학교민원 처리'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민원 처리의 지원 또는 해당 업무의 직접 처리'는 용어가 중복(해당 업무(학교민원 처리)의 직접 처리)되므로, '학교민원 처리의 지원 또는 해당 업무의 직접 수행' 또는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5항은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규칙만 제정할 수 있는데,⁵⁾ 개정안 제36조제2항은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도 학교민원 접수 등 관련 조직·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의 조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에 대한 위임 조항을 특정하여 명시하거나 위임 대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조문체계

- 개정안은 제4장 학교에 제3절⁶⁾ 학교민원 대응을 신설하고,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와 제36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규정하는 한편, 제37조에 현행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규정함.

학교민원 대응은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제4장 학교에서 각급학교의 내용에 앞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36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는 학교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한 기구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학교민원 처리의 계획 및 지원계획을 규정한 제37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 제37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를 먼저 규정하고 제36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그 다음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제3절에 유치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4.1.29.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해당 절은 삭제됨.

* 2004.1.29.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법률 제7068호, 2004.1.20. 개정, 2004.1.20. 시행)

제3절 유치원

제35조 (목적)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37조 (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체계(개정안 포함)]

초·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2장 의무교육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2절 교직원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제36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제37조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절 초등학교
제5절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6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7절 특수학교 등
제8절 각종학교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제5장 보칙 및 벌칙

주: 개정안은 음영 및 밑줄로 표기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안 제35조)

- 학교민원은 일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달리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과 관련된 교육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어 「민원처리법」에서 규율하는 일반 행정 절차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민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민원 제기자에게 교육활동 존중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36조)

- 학교 민원대응팀과 관할청 통합민원대응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사 개인이 학교민원의 접수·처리를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학교 민원대응팀 및 관할청 통합민원대응팀을 법정기구화 함으로써 학교민원에 대한 기관단위 대응 체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학교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경기도교육청: 일부수정

- (안 제35조제5항) 민원의 성격을 교원의 임무와 역할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제한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를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중 교사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학교민원의 정의,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등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만 규정함.
- ☐ 이는 가장 가까운 신학기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관련된 법령 개정 등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법안 심사 경과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9